

제주지방법원 2022. 3. 22 선고 2021가단6272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정빈(소송구조)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3. 2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김희진

청 구 원 인

1. 소외 땅 C은 전남편인 정명불상자와의 사이에 피고 및 소외 D을 낳았고, 소외 땅 E과 혼인한 후 원고와 소외 F, G, H를 낳았는데 2018.7.4. 사망하였습니다.
2. 위 E은 2018.4.27.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되었고 이로 인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C이 13분의 3, 원고와 F, G, H 및 E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남은 I가 각 13분의2 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.
3. 땅 C은 치대를 알고 있어 제주도 소재 J 병원에 입원하여 있다가 사망하였는데, 피고는 땅인의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위 각 부동산 중 위 땅인의 지분에 관하여 2018.5.23.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동기소 접수 27566호로 같은 해 5.15.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이를 가로챘습니다.
4. 이에 소외 H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제주지방법원 2018가단 8988 소유권이전등기 등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, 위 판결은 2020.11.7. 확정되었습니다.
5. 이에 원고는 소외 H가 소제기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위 땅인의 지분 중 원고의 상속분에 관하여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여 이 사건 소송에 이르렀습니다.



[별지]

목 록

1.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전 1,567㎡
3/78 지분
2.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전 4,453㎡
3/78 지분
3.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전 4,356㎡
3/78 지분
4.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전 1,985㎡
3/78 지분
5.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 2,295㎡
3/78 지분, 끝.

